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절차 명령 제 18 호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1 년 9 월 20 일

## I. 재판 경과

1. 2020 년 1 월 13 일, 중재판정부는 문서제출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 중인 요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시하는 절차 명령 제 8 호를 발령하였다.
2. 2020 년 2 월 27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문서제출 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는 절차 명령 제 12 호를 발령하였다.
3. 2020 년 6 월 24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 해 줄 것을 요청한 2020 년 6 월 1 일자 청구인의 신청에 관한 절차 명령 제 14 호를 발령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특히 다음을 결정하였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피신청국이 그 소유, 보관 또는 통제에 속한 문서 혹은 특정 문서들을 제출하지 못 했음을 확인하고, 상기한 모든 불이행으로부터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위배하지 아니한다.

4. 2020 년 8 월 7 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문서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한 2020 년 5 월 30 일자 피청구국의 신청에 관한 절차 명령 제 16 호를 발령하였다.
5. 2020 년 9 월 4 일,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16 호에서 결정한 사항 일부를 재고해 달라는 피청구국의 2020 년 8 월 14 일자 요청을 기각하는 절차 명령 제 17 호를 발령하였다.
6. 2020 년 11 월 10 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에게 서신을 통해, 피청구국이 “2020 년 1 월 13 일에 중재판정부가 수락한 청구인의 문서제출 요청에 해당하고, 본 중재의 쟁점과 관련성 및 중요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삼성그룹 █████ 부회장(이하 “████”)에 대한 한국 검찰청(이하 “검찰”)의 공소장(이하 “검찰 공소장”)에서 적시되었거나 기소 근거가 된 추가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2020 년 12 월 4 일, 피청구국은 문서개시가 불충분하였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범죄수사에서 발생하는 문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법과 국제법에 따른 법정 장애”에 의해 제출이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8. 2021 년 3 월 22 일, 피청구국은 검찰 공소장과 관련된 6 건의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9. 2021 년 7 월 14 일, 피청구국의 2021 년 3 월 22 일자 자발적 문서제출 및 검찰 공소장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에 비추어,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i) 피청구국이 문서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상응하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하고; (ii) 새롭게 확인된 문서들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신청서”). 청구인은 신청서에 피청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6 건의 문서를 동봉하였다.
10. 2021 년 7 월 16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에게 청구인의 신청서에 관한 의견을 2021 년 7 월 28 일까지 요청하였다.

11. 2021 년 7 월 17 일,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길고 뒤늦은 신청서에 대응하기에는 2 주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신청서에 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21 년 8 월 12 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2. 동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2021 년 7 월 20 일까지 청구인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피청구국의 요청을 허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13. 2021년 7월 20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연장 요청에 반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4. 2021 년 7 월 29 일, 청구인은 신청서와 관련된 짧은 정오표를 제출하였다.
15. 2021 년 8 월 12 일,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16. 2021 년 8 월 19 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짧은 의견을 2021 년 8 월 27 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하였다.
17. 동일, 중재판정부는 2021 년 8 월 27 일까지 피청구국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을 수락하고 피청구국이 2021 년 9 월 3 일까지 청구인의 제출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18. 2021 년 8 월 27 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19. 2021 년 9 월 3 일, 피청구국은 2021 년 8 월 27 일자 청구인의 답변에 관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20. 2021 년 9 월 10 일, 청구인은 2021 년 9 월 3 일자 청구인의 제출에 답할 의도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21. 본 절차 명령은 2021 년 7 월 29 일자 청구인의 신청서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명시한다.

## II. 청구인의 신청서

22.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
  - (i) 중재판정부가 이미 문서제출을 명하였고 현재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이 이러한 명령에 응하여 개시한 문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 (a) [...] █████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이 제공한 뇌물의 대가로 국민연금에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을 하도록 청와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에 막강한 영향력 및 지배력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 (b) [...] █████ 전 대통령은 삼성과의 부패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를 거쳐 국민연금에 이르는 일련의 지시를 내렸고, 결국 국민연금의 █████ 전 본부장은 이러한 압박을 받아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본건 합병에 찬성하게 하였으며;

- (c) [...] █████ 전 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본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삼성 관계자들과 공조하여 먼저 국민연금의 전문위원회가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하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전문위원회가 제안된 조건으로는 본건 합병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지자, 대신하여 투자위원회가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공모하였다.
- (ii) 또한, 한국의 검찰 공소장을 통하여 본 중재에서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쟁점들과 관련이 있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들이 한국의 보유, 관리 및 통제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기에,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범주의 문서들에 대한 신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a) [...] 국민연금이 본건 합병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었으며, 한국과 삼성은 국민연금의 표결이 본건 합병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 (b) [...] 본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은 삼성이 다른 주주들의 표결에 개입하여 이를 조작하기로 계획하고 결국에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부 주주들 역시 본건 합병에 찬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화 또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문서; 아울러
  - (c)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이 본건 합병에 대한 표결이 있기 1 년 넘게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본건 합병 계획에 따라 본건 합병 이후 삼성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청구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

23. 청구인은 또한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신청서에 포함된 증거자료를 기록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4.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신청서를 전부 기각하고, 본 신청서를 다투면서 지출한 피청구국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 III. 당사자들의 입장

#### 1. 청구인의 입장

25. 청구인은 최근 피청구국이 본 중재에서 청구인의 문서제출요청에 상응하나 피청구국이 개시하지 않았던 6 건의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그 중 5 건은 2020 년 6 월 1 일자 청구인의 신청(위 3 항 참조)의 대상이었다고 진술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자발적이면서도 선별적인 문서 제출, 아울러 █████ 및 삼성그룹의 기타 구성원에 대한 기소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추가적인 문서의 존재를 드러낸다.

26.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i) 피청구국이 해당 문서들이 청구인의 문서제출요청 항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문서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상응하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하고; (ii) 청구인이 2019 년 최초 문서제출요청 당시 문서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범위 내에서 최근에서야 새롭게 확인된 문서들에 대한 제출을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A. 요청대상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

27. 청구인은 요청대상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의 문서제출 명령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법적 장애로서 한국의 권력 분립에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한국 법률상 한국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어떠한 구별도 피청구국의 국제법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한국법상, 법무부가 관련 대상문서들을 사법부나 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 것이 한국 사법부나 검찰청이 청구인에게 문서제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나 법적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결정한 절차 명령 제 8 호를 인용한다. 청구인은 또한 사실상 동일한 이의제기가 *메이슨 v. 대한민국*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주장한다.
28. 청구인은 형사수사가 완료 되었고 이미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그 공판이 일반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형사수사의 기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피청구국이 인용한 법적 근거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에 대한 재판은 중재판정부가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어떠한 법적 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재판 절차”와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29.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등 형사 수사 기록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국 법률상의 근거가 ████████에 대한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문서제출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거부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피청구국이 본 중재에서 검찰 공소장의 근거가 된 문서들을 이미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청구국 자체가 한국법을 심각한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0.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3 건의 문서가 “언론에 의해 핵심 부분이 공개”되어서 특정 새로운 문서가 “제출 가능해졌다”고 제안하지만, 피청구국이 인용한 언론기사 중 두 개는 절차 명령 제 14 호 이전에 보도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문서들이 항소심 이상의 단계에 도달한 소송절차와 관련되어 제출이 가능해졌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이전에 ████████ 형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했었다고 지적한다.
31.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확인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적법절차 요건에 따라 피청구국이 법적장애를 근거로 문서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청구인이 문서제출 보류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구체화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국의 이의 제기는 이 추가적인 근거로 기각되어야 한다.

32. 마지막으로, 설령 문서제출에 대한 타당한 법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Apotex Holdings. v. U.S.*에 의존하여,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증거의 제출을 보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 중재판정부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33. 청구인은 문서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면증거를 보류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도출한다는 제재가 적용된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상기한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다수의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의 제출 명령에 반하여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i)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특정 사실들에 관한 진술은 해당 사실들에 대한 피청구국의 진실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ii) 해당 진술사항들은 형사재판에서 요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피청구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한 후 한국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아울러 (iii) 피청구국이 본 중재절차에서 해당 증거들에 대한 제출을 보류한 이유가 “청구인의 주장들에 대한 한국의 억지 방어를 약화시키고 그에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불리한 추론을 요청한다.
34. 첫째,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redacted] 전 대통령과 [redacted] 사이에는 본건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한 부패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사하지 않은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진술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문서가 “(a) [redacted] 부회장과 [redacted]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본건 합병 표결에 찬성하도록 공모하였고, 아울러 (b) [redacted]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이 제공하는 뇌물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에 자신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것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 둘째,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홍완선 전 본부장은 청와대 및 부처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을 하도록 하였다”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요청을 위해, 청구인은 검찰 공소장이 피청구국이 제출하지 않은 문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대통령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확립한다고 주장한다.
36. 셋째,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redacted] 전 본부장 및 기타 정부 관계자들은 삼성 관계자들과 공주하여 전문위원회의 표결을 유도하였으며, 이후 대신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본건 합병에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검찰 공소장이 동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문서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이러한 문서들은 “[redacted] 전 본부장과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비롯한 기타 정부 관계자들이 전문위원회의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삼성 측 관계자들과 공조하였고, 전문위원회가 제안된 조건으로는 본건 합병에 반대할

것임이 명확해지자 이후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본건 합병에 찬성 투표하도록 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37. 검찰의 주장이 해당 사실들에 대한 한국 측의 진실된 믿음을 반영할 수 없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국제법상 국가는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정부들은 특정 국가 기관의 행위를 무시하는 근거로 국내법의 권력분립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Chevron v. Ecuador* 를 참고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피청구국이 국제책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검찰이 국내 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을 “부정”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38. 청구인은 불리한 추론 요청이 한국법원이 다양한 소송절차에서 내린 판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 이 ███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다.
39. 또한, 청구인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특정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거나 특정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그러한 특정 요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국 법원이 특정 주장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도 청구인이 같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를 찾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40. 본 신청서의 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불필요하게 되풀이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심리기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지금 피청구국에 상응하는 불리한 추론을 도출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 C. 청구인은 신규 문서제출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41.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본 중재의 주요 사안들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한, 그러나 청구인이 2019 년 최초 문서제출 요청을 할 당시에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수많은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본 중재와 관련이 있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 신규 문서제출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i) 국민연금이 본건 합병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다는 여러 당사자들의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문서. 해당 문서들은 국민연금의 표결이 본건 합병을 성사시킨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피청구국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
  - (ii) 본건 합병에 찬성한 다른 주주들의 표들이 삼성에 의해 매수되거나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 해당 문서들은 본건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의 표결이 자의적이었으며 한국에 의한 협정 위반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 아울러
  - (iii) 본건 합병 발표 전후 삼성물산 주가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해당 문서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본건 합병 시점에서 해당 주식의

가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

42. 청구인은 삼성 그룹이 2016 년 3 월 이전에 작성한 문서는 삼성 그룹으로부터 직접 요청되었어야 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거부한다. 청구인은 아주 최근까지 해당 문서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청구인은 또한 2021 년 3 월 피청구국의 자발적 문서제출이 주로 검찰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 내부 문서들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한다.
43. 청구인은 검찰이 예정되었던 문서제출이 종료된 지 1 년 후에야 이러한 새로운 문서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유추하였기 때문에 추가 문서제출에 대한 요청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요청된 문서가 최근에야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졌을 경우”에는 신규 문서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을 지적한다. 2020 년 11 월 이후 당사자들간 서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에 피청구국이 응답하기를 꺼리는 요청에 대해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 2. 피청구국의 입장

44. 피청구국은 본 신청서에 반대하며 중재판정부가 이를 전부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본 신청서를 인용하는 경우, “국제적 간섭 없이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하여 국내 기소절차를 진행할 한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고,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헌법상 권력 분립의 보장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한국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추 절차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 A. 문서제출에 있어 법적 장애가 존재한다

45.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문서의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문서들은 엄격한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문서제출에 법적 장애가 되고, 공소장 관련 수사 서류나 사법 절차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관련 한국법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기소장 발부나 법정소송 개시 후에도 적용이 중단되지 않는 형사소추의 기밀성 원칙을 보완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동 원칙의 근거는 외부 간섭 없이 심각한 범죄를 진행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중에도 계속 적용된다.
46. 피청구국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 등 증거자료를 청구인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자신의 기소 전략을 밝히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재판 중에도 공소장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국은 형사소추의 기밀성 원칙이 재판 중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 피청구국은 2021 년 3 월에 청구인에게 제출한 6 건의 문서가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거나 법원의 최종 결과에 의해 대체되어 법적 장애가 사라진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출되었다고 진술한다. 피청구국은 검찰이 해당 문서들을 공개한 후 한국 법무부가 소유하게 된 즉시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강조한다.
48. 피청구국은 또한 [REDACTED] 과 과거 정권의 구성원들에 대한 과거 형사 절차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들이 해당 절차들이 항소심 이상의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제출되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REDACTED] 재판에 출석한 판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2 건의 특검 문서의 공개는 [REDACTED] 재판과 관련된 문서와는 달리 [REDACTED] 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법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끝난 후에야 제출되었다.
49. 마지막으로 피청구국은 자신의 임의 제출이 제출한 6 건의 문서 또는 검찰 기소장에서 언급될 수 있는 기타 문서의 관련성과 중대성에 대한 수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대신에, 최근의 제출은 본 중재에서 지속적으로 문서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필수적이고 헌법상 의무적인 제한에 의해 제약을 받는—피청구국의 노력을 반영한다.

**B. 불리한 추론을 도출하려는 청구인의 요청은 반드시 실패한다**

50.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불리한 추론을 도출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은 청구인의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인은 (i) 피청구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고 (ii) 구하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일응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51. 첫째, 피청구국은 하나의 국가 기관이 표명한 바 있는 입장이 국가 전체의 심리상태를 대변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국가기관들이 마땅히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으며, 검찰이 공소장에서 국내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한 진술이 국제투자중재 절차에서의 국가의 믿음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이 인용한 법적 권한은 검사들이 재판 전에 한 진술이 국가의 “진실된 믿음”을 반영한다는 추론에 관한 현 사안과는 달리, 국가에 귀속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52. 둘째,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요청대상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청구인은 검찰 공소장에서 의존한 증거가 새로운 것이거나 이전의 한국 법원 소송 절차에서 사용된 증거와 다르다는 가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문서가 피청구국에 의해 보류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53. 셋째, 피청구국은 요청된 추정의 일부는 기록상 증거와 한국 법원이 예전 소송에서 내린 판단과 불일치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청구국은 한국 법원이 [REDACTED] 전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REDACTED] 이 제공한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대가관계*를 인정했지만 본건 합병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대한 혐의는 분명하게 기각하였다고 지적한다.

54. 넷째, 피청구국은 요청된 추정의 일부는 검찰 공소장 내용의 잘못된 표현을 토대로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피청구국은 검찰 공소장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REDACTED]이 합병 성사에 대한 어려움을 [REDACTED]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REDACTED]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이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i) 정부가 [REDACTED]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본건 합병을 지원하지 않았고, (ii) 주주들이 본건 합병에 표결한 이후까지 [REDACTED] 전 대통령과 [REDACTED]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으며; (iii)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본건 합병 안건을 부의하라는 [REDACTED] 장관의 지시가 [REDACTED]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추정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가득”하며 “편향되고 신뢰할 수 없는 소위 ‘증거’”에 입각한다.
55.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검찰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불리한 추론을 위한 신청서가 아닌 본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리한 추정을 구하는 신청서는 요구되는 추론이 기록상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56. 마지막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불리한 추론 요청 시기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요청 제출을 위한 적절한 기간은 제 2 차 준비서면 제출 절차 도중 또는 심리기일인 이유는 중재판정부가 그 전에 완전한 사실 기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불완전한 제출로부터 발생한 피청구국의 불리한 추론 신청은 재판문서면에 기재하였다.

### C. 추가 문서제출 요청은 부당하다

57.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본 절차 단계에서 새롭고 뒤늦은 문서제출 요청을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요청대상문서들은 청구인의 2019 년 기존 문서제출 요청에 포함될 수 있었다. 피청구국은 또한 중재판정부가 이미 피청구국이 문서제출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청구인의 불만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피청구국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음을 상기한다.
58.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요청한 추가 문서는 피청구국이 아닌 삼성그룹의 행위와 관련이 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본건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또한, 피청구국의 입장에서 “기껏해야 쟁점에 대하여 지엽적인” 문서들은 제출이 명령되어서는 안 된다.
59. 새로 요청된 첫 번째 문서 범주에 대해서 피청구국은 본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연금의 표결이 없었다면 삼성그룹이 본건 합병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표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쟁 중인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60. 이와 유사하게, 피청구국은 두 번째 요청 문서 범주는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표결이 결정적이었다는 “근거 없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삼성이 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 투자자들이 “원래는 반대하였을 본건 합병에 찬성 표결하도록 속았다”는 가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61. 세 번째 요청 문서 범주에 대해서 피청구국은 삼성그룹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청구인은 합의를 선택한 소송을 둘러싼 양 당사자 사이의 업무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직접 해당 문서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IV. 중재판정부의 분석

##### 1. 신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청구인의 요청

62. 중재판정부는 먼저 당사자들이 본 절차의 후반 단계에서 추가 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을 주지한다. 피청구국은, 절차 명령 제 1 호 제 5.1 항 및 절차 명령 제 2 호에 명시된 절차시간표를 언급하며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이 두 명령은 당사자들이 1 차 서면 제출 후 문서제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하며, 추가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관련되고 대응되는 문서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가 문서제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sup>
63. 중재판정부는 이미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새롭게 요청한 문서가 최초 문서제출 요청 당시 상대 당사자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면 당사자의 신규 문서제출 요청을 막을 수 없다고 간주한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에게 문서 및 기타 증거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UNCITRAL 중재규칙 제 27(3)조와 일치한다. 본 조항은 당사자가 아닌 중재판정부가 직접 문서제출 요청을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요청대상문서가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 결과에 중요하다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하고 해당 문서를 합리적으로 더 일찍 요청할 수 없었고 중재판정부가 상대 당사자에게 요청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64.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 제 37, 41, 43, 및 44 항에 언급된 추가 문서들을 피청구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최초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sup>2</sup> 청구인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의 상당수가 피청구국이 아닌 삼성의 내부 문서들이어서 피청구국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었음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더 일찍 요청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피청구국은 공소장이 2020년 11월에 제출된 피청구국의 재반론 및 본안 진 의의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서면에 이미 증거로 함께 첨부되었고, 청구인은 2020년 11월에 당사자들 간 서신에서 동일한 문서를 요청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요청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65.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요청이 실제로 본 절차에서 다소 늦었지만, 이 근거만으로 요청을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66. 피청구국은 또한 미제출된 문서가 실제로 존재함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요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

<sup>1</sup> 청구인의 답변, 제 36 항.

<sup>2</sup> 청구인의 신청서, 제 36 항.

이의제기에 전제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본다. 요청하는 당사자가 요청대상 문서들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해당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경우, 청구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서가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고, 증거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의 주장이 기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가 문서제출 요청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절차 명령 제 1 호 제 5.3.6 조)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 협회 규칙(2010)(이하“**IBA 규칙**”) 제 3.9(c)(ii)조에 따르면, 요청 당사자는 “현재 상대방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유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강조 추가.). 요청 당사자는 요청대상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증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67. 피청국은 또한 요청대상문서들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그 결과에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의 주장은 분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청대상문서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관련성과 중요성은 분쟁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느 당사자가 승소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 아닌, 분쟁중인 사안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68. 피청구국이 요청대상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근거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에 의존하려고 하는 한, 중재판정부가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이미 그 주장을 거부했음을 상기한다.
69. 피청구국은 또한 요청대상문서가 한국법상 범죄수사의 기밀성 원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요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청구국에 따르면, IBA 규칙 제 9.2(b)항의 의미 내에서 제출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가 있다.<sup>3</sup> IBA 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범죄수사가 “법적 장애”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절차 명령 제 14 호 에서 다루었다. 중재판정부는 본 사안을 다루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고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개시로 이르지 않은 진행 중인 범죄수사는 형사법 제 126 조에 따라 범죄수사의 기밀성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prima facie*), 문서제출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한국 법률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제출한 입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4</sup> 중재판정부는 또한 위 결정이 “청구인이 적절한 시기에 한국 법률 규정이 실제로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거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론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sup>5</sup>

---

<sup>3</sup> IBA 규칙 제 9.2(b)조는 해당 부분에서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다음에 해당하는 이유로 문서...를 제출로부터 제외한다: ... (b)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한 법적·윤리적 규칙에 의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경우.”

<sup>4</sup> 절차 명령 제 14 호, 제 73 항.

<sup>5</sup> 절차 명령 제 14 호, 제 73 항.

70. 피청구국은 현재 검찰 공소장처럼 범죄수사가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요청대상문서는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에 따라 범죄수사의 기밀성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법정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수사 문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문서들이 제출되지 않은 한, 한국법에 의해 기밀로 유지될 수 있다. 제 266 조의 3 은 해당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 266 조의 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2)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71. 제 266 조의 3 제 1 항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만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고” 아직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또한, 제 266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검사는 특정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2.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이 “국제법에 따른 한국 측의 의무 이행이라는 의미에서의 문서 제출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중재에서 한국이 중재판정부 명령에 따라 문서를 공개하는 데에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3. 절차 명령 제 14 호의 예상과 달리 중재판정부가 마주한 쟁점은 범죄수사의 기밀이 기소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기소를 뒷받침하는 문서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이다.

---

<sup>6</sup> 피청구국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 25 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의 답변, 제 32(c)항 참조.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동 쟁점을 언급하지 아니한 바, 이는 범죄수사가 여전히 계류 중이고 아직 기소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청구국에 따르면, 수사 결과 현재 기소가 이루어져 한국 법원에 형사소송이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소의 근거가 되거나 기소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범죄수사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는 바, 이는 해당 문서가 공개법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신청서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문서가 실제로 공개 법정에서 공개되었거나, 언론에 의해 공개된 바 있는지의 여부가 피청구국이 제출한 서면에서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동 내용이 사실인 경우, 해당 문서는 범죄수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74.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제 1 항 해석에 대해, 이는 한국 법령의 문제로,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 조항이 “대한민국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자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규율하지는 아니”하며,<sup>7</sup> 한국의 국내법이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답변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중재판정부는 명시된 일반적인 조건상 청구인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전의 쟁점은, 국제법이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해당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지의 여부이다.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국제 법원 및 재판소에서 실제로 우선권을 발휘하나, 이는 관련 법규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제재판소 및 판정부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가 관련 법을 언급하거나 관련 적용을 요구 또는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한 충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법규는 아니지만, 절차 명령 제 1 호의 지침에 의거 중재판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IBA 규칙 제 9.2(b)조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법적 또는 윤리적 규칙이 적용”됨을 언급한다. 문제의 법적 규칙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의 규칙일 수 밖에 없는 바, 이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는 국제법이 지방 당국이 수행하는 범죄수사의 기밀유지 또는 관련 “법적 장애”를 관할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sup>9</sup> 국제 중재판정부가 범죄수사의 기밀유지를 인정하고 시행하는 결정들을 내린 바가 있기는 하나, 기존의 결정은 국제법이 아닌 관련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sup>10</sup>
75. 청구인은 또한 중재판정부가 이미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협약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범죄수사의 기밀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음을 제안한다.<sup>11</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중재판정부는

<sup>7</sup> 청구인의 신청서, 제 12 항.

<sup>8</sup> 청구인의 답변, 제 8 항.

<sup>9</sup>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비밀에 관한 규정은 재판소내 재판 절차를 위해 진행되는 수사에만 적용되며, 국내 법원 절차를 위해 지역 당국이 진행하는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www.icc-cpi.int/>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및 국제형사재판소 절차규칙 참조.

<sup>10</sup> *Libananco v. Turkey* 및 *BSG v. Guinea* 등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인용한 두 결정과 관련된 경우이다.

<sup>11</sup> 청구인의 답변, 제 11 항.

범죄수사의 기밀성이 기소 후의 소송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았다.

76. 상기를 반영하여,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주의 깊게 고려한 결과,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기록된 바에 관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제 1 항에 의거, 범죄수사의 기밀이, 문제의 문서가 공개 법정에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한 법원에 제출된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근거가 되는 문서까지도 포함함을 확인한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1 제 1 항의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서 동사 “할”의 시제에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문서가 한국의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문서가 공개 법정에서 공개되었는지, 또는 그 내용이 요청에 따라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거나 공개된 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내용이 공개된 경우, 관련 문서는 더 이상 범죄수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공개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해당 문서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제 1 항에 의거하여 명백히 범죄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77. 중재판정부의 상기 판결은 절차 명령 제 14 호에서 동 판정부가 명시한 통고에 귀속된다. 그 결과, 범죄수사상 기밀의 범위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잠정적인 바,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66 조의 3 을 포함, 한국 법령 적용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제한된 의견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이는, 대한민국 법령이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요청한 문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실제로 정당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기 취지에 따라, 청구인은 심리 이전 또는 심리 중에 불리한 추론에 관한 요청을 포함하여, 피청구국이 이에 답변할 기회가 있는 한, 자유롭게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2. 불리한 추론을 구하는 청구인의 요청

78.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14 호 제 75(g)항 및 절차 명령 제 16 호 제 72(h)항에서 두 절차 명령 내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상대 당사자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특정 문서 혹은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고, 모든 불이행으로부터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내린 판결을 상기한다.
79.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본 신청서에 그러한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국은 이와 유사하게 재반론 및 본안 전 이의제기에 대한 재반박서면에서 불리한 추론 요청을 하였으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중재판정문의 선고 과정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sup>12</sup>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불리한 추론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적절한 시기가 실제로 중재판정문의 선고 과정에서라는 피청구국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를 통해 중재판정부는 심리에서 전개될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에서 당사자들의 요청의 근거와

---

<sup>12</sup> 2020 년 11 월 13 일자 재반론 및 본안 전 이의제기에 대한 재반박서면, 제 276-86 쪽.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심리에서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요청을 지지하는 구두 변론 또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80.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불리한 추론 요청에 대한 결정은 절차의 더 적절한 나중 단계로 연기한다.

#### V. 청구인의 승인 요청

81.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신청서에 포함된 증거자료를 기록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해당 증거자료는 피청구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피청구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요청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승인한다.

#### VI. 중재판정부의 결정

82.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청구인의 신청서 제 46(ii)(a), (b) 및 (c)항과 제 37 항, 제 41 항, 제 43 항 및 제 44 항에 명시된 범주의 문서들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신규 문서제출명령을 발부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해당 문서들이 법원에서 공개되었거나, 문서들의 내용이 요청에 상응하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에 의해 공개된 한에서 수락한다;
- (b) 신청서 제 46(i)에 명시된 대로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게 불리한 추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요청은 절차의 적절한 단계로 연기한다;
- (c) 청구인 신청서에 포함된 증거자료를 기록에 추가할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 (d) 비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유보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